

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3일 (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)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고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	업 종	

변경 사항	영업자성명 (법인은 대표자성명)		변경 전					
			변경 후					
	업 체 명		변경 전					
			변경 후					
	업체의 소재지		변경 전					
			변경 후					
	① 가공능력 (M/T)	제분· 제조업 (1일 24시간 기준)	제 품	변경 전	제 분		제 조	
				변경 후				
			원 료	변경 전				
				변경 후				
		도정업 (1일 8시간 기준)	변경 전	정미	정맥	밀쌀	압맥	할맥
			변경 후	정미	정맥	밀쌀	압맥	할맥

변경 사유	
-------	--

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제1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※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.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(「양곡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) 1부. 2.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(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작성방법

1. ①란은 제조업·제분업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고,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,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적습니다.

유의사항

- 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「양곡관리법」 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)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